#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33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임미애·이병진·박지원

박해철 • 복기왕 • 최기상

이재관 · 허성무 · 김영환

이원택 • 김성화 • 문금주

박지혜·장종태·김 유

송재봉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(認定)을 받아 타인의 '토지' 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와 관련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그런데,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

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,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,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 제목 중 "토지수용"을 "토지등의 수용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전단 중 "토지"를 "토지·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·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·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토지의"를 "토지등의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0조(토지수용 등) ① 해저조광 제30조(토지등의 수용 등) ① ---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-----<u>토지·</u>건물 또 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 수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(認定)을 지 ·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받아야 한다. 광업권 · 어업권 · 양식업권에 관한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---.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인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,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 --토지등의-----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」을 적용한다.